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-66호

두동지구개발사업 환지계획(예정지지정) 공고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의2(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)와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(환지계획의 작성)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고, 「도시개발법」 제35조(환지예정지의 지정)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
1. 사업명 : 두동지구 개발사업
2. 위치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
3. 시행자 :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
4. 시행면적 : 1,679,169㎡(환지대상 : 576,827㎡)
5. 시행기간 : 2004. ~ 2018.
6.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: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게 개별통지
7.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: 2016. 09. 30.
8.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유의사항
 - 가. 관계도서는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에 비치합니다.
 - 나.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한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 - 다.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6조(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)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.
 - 라.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 이행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.
 - 마.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발생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- 바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(☎055-320-5221,52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9월 8일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